

별첨자료

노동조합 운영체계의 개괄적 이해 - 『규약』을 중심으로

- I. 주요사항에 대한 규약집 비교표
- II.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규약
 -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및 세칙
- III. 한국노총 노동조합 규약안

조합원의 권익을 쟁취하는

제17대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1. 주요사항에 대한 규약집 비교표

구분	한국노총 규약안	본조 규약
기구 구성 [의사결정 및 집행]	1. 총회(대의원대회) 2. 운영위원회 3. 상무집행위원회 4. 회계감사위원회 5. 쟁의대책위원회 6. 선거관리위원회 7. 징계위원회 8. 희생자부조위원회 9. 여성위원회 10. 기타 특별위원회	1. 총회 2. 대의원회 3. 집행위원회 4. 선거관리위원회 5. 회계감사위원회 ※ 쟁의대책위원회 ※ 징계위원회 ※ 자문위원회: 비의결
총회	최고의사결정기구	최고의사결정기구
대의원회	<p>[기능] 총회 의결사항 중 대표자의 선출과 해임, 조직형태의 변경, 조직의 합병, 분할, 해산, 쟁의행위 결의를 제외한 사항은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다.</p> <p>[대의원의 선출 및 임기] 대의원은 (부서별/지역별) 선거구에서 조합원 ○○명당 1명씩 선출하며, 단수 ○명 이상 일 때 추가로 1명을 배정한다.</p>	<p>[기능]</p> 1. 임시총회 소집요청 2. 총회에 상정할 안건 심의 3. 총회에서의 수입사항 집행 4. 조합운영방침 및 정책수립에 대한 심의 5. 상급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심의 6. 각종 세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심의 7. 선거관리위원의 선출 8. 예·결산에 대한 심의 (……) 13. <p>[대의원 선출] 대의원 선출은 입후보자가 10인 이하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확정되고, 10인을 초과할 경우에는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에 의해 10인을 기표하고 1차 투표에서 다수 득표자 순으로 당선된다.</p>
운영위원회	상급기관(중앙위원회)	-
상무집행위원회	임원 및 부서장 구성: 수입사항	집행위원회: 좌동
회계감사위원회	감사기구: 규약집 참고	좌동
선거관리위원회	규약집 참고	좌동
기타 특별위원회	규약집 참고	-
단체교섭 및 협약	규약집 참고	규약집 참고
노동쟁의	규약집 참고	규약집 참고
노사협의회	규약집 참고	규약집 참고
재정	<p>[조합비]</p> 1. 일반조합비: 월 ○○원 / (기본급, 통상임금, 월임금총액)의 ○% 2. 특별조합비: <u>규약 제11조 및 제12조에</u> 의한 특별기금	규약집 참고

II.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규약

대구대학교 노동조합규약

개정 : 2014.12.16.

전 문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열악한 근로조건과 부당한 핍박에 대하여 노동운동을 전개해온 선구적 노동자들의 투쟁정신을 겸허하게 계승하여 전국의 노동자와 함께 굳게 단결하여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의 근로자로서 대구대학교의 발전과 재직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 조합의 명칭은 전국사립대학교 노동조합연맹 대구대학교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 2조(목적) 본 조합은 대구대학교에 재직하는 직원이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조합원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아울러 대구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사업)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조합원의 생활향상과 노동3권 확립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의 교육 및 조직정비 강화에 관한 사항
4. 대학 경영 합리화 추진 및 촉구에 관한 사항
5. 대학 자율권 확보에 관한 사항
6. 대학 발전을 위한 협력체제 추진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문화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8.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평등에 관한 사항
9. 상급단체 활동에 관한 사항
10. 기타 전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4조(소재지) 본 조합의 사무소는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201 대구대학교 내에 둔다.

제 5조(가맹) 본 조합은 상급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 2 장 조 직

제 6조(구성) 본 조합은 대구대학교에 재직하는 직원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를 제외한 자로 구성한다.

1. 3급 이상
2. 처장, 부처장, 부속기관장, 소장
3. 대학자체직
4. 계약직
5. 일용직
6. 촉탁직
7. 기타 조합대의원회에서 사용자의 이익을 위한다고 판단되어 조합의 자율성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의결된 자.

제 7조(자격상실) 조합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퇴직 또는 해고되었거나 사망했을 때
2. 조합 규약의 절차에 의해 제명되었을 때
3. 조합이 정한바 조합원 제외 범위에 해당되었을 때, 다만 제1호의 해고나 제2호의 제명 처분에 불복하여 처분을 받은 후 법원 노동위원회나 관련행정관청 또는 위원장에게 구제 신청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

제 8조(자문위원회) 본 조합은 대의원회의 결의에 의거하여 비의결기구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 9조(권리) 조합원은 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조합의 모든 활동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2. 조합의 각종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
3. 조합의 결정사항과 업무집행사항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4. 조합의 시설과 사업을 이용할 권리

제10조(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가 있다.

1. 조합의 운영규정과 각 부서의 결의 및 지시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조합과 대학간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기타 협정을 준수할 의무
3. 조합 활동에 필요한 기밀을 준수할 의무
4. 총회에서 의결된 각종 기금을 납부할 의무
5. 매월 봉급의 0.7퍼센트를 조합비로 납부해야 하며, 매월 20,000원의 목적적립금을 납부할 의무

제11조(신분보장및목적적립금) ① 조합원이 조합공식기구의 결정사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분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경우는 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조합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이에 한하여 피해보상을 위한 목적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② 목적적립금은 조합원 자격상실 전까지 납부하며,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는 개인 부담원금을 환불한다.

제11조의1(노동조합 후생복지비)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각종 경조사비를 지급할 수 있고, 세부 기준은 별표1에 의한다.

제 4 장 기 구

제12조(기구) 조합은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 대의원회
3. 집행위원회
4. 선거관리위원회
5. 회계감사위원회

제 1 절 총 회

제13조(구성)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14조(소집)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한다.

1.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8월중에 실시한다.
3. 임시총회는 위원장의 요청 및 부서장의 의결로 소집한다.
4. 대의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5. 전호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10일이 지나도록 위원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 대의원회에서 호선한 자가 소집을 대행할 수 있다.

제15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2. 조합임원 및 사업 탄핵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5.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설치 및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7. 조합의 합병, 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9. 조합임원 및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10. 조합임원 및 대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
11. 조합원의 징계, 재심에 관한 사항
12. 기타 중요한 사항

제16조(소집공고) ①총회의 소집공고는 총회 일로부터 3일전에 일시 및 회의장소와 의결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한다.

②소집 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24시간 이전에 공고한다.

③소집공고 후라도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다면 이를 연기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소멸한때는 지체 없이 재소집 공고를 해야 한다.

제 2 절 대의원회

제17조(구성) 대의원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10인과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제18조(임원선출 및 임기) ①의장선출은 대의원 2/3이상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이 호선한다.

②총무는 의장이 호선하여 선출한다.

③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의장 및 총무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의장은 대의원회를 총괄하며, 대의원회를 대표한다.

제19조(소집) 대의원회의 소집은 의장과 집행위원회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이를 의장이 소집한다.

제20조(기능)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시총회 소집요청
2. 총회에 상정할 안건 심의
3. 총회에서의 수입사항 집행
4. 조합운영방침 및 정책수립에 대한 심의
5. 상급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심의
6. 각종 세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심의
7. 선거관리위원의 선출
8. 예·결산에 대한 심의
9. 예산 항목의 전용 승인
10. 단체협약(안) 심의
11. 노사협의회, 소속단체 파견 대의원, 선거인 및 교내 각종위원회 노동조합 위원의 추천 심의
12. 각종 대책위원회 구성 심의
13. 기타 조합운영에 관한 사항

제 3 절 집행위원회

제21조(구성 및 소집) 집행위원회에는 회계감사를 제외한 임원 및 각 부서의 장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이 필요할 시 또는 집행위원의 3분의 2이상이 요청할 시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2조(기능)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 및 대의원회의 수입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2. 조합일상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안)에 관한 사항
4. 조합운영 방침 및 정책 수립
5. 총회에 상정할 안건 수립
6. 조합예산, 결산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8. 규약 및 규정의 해석
9. 기타 중요한 사항

제 4 절 회계감사 위원회

제23조(구성 및 소집) 회계감사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중에서 호선된 대표위원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제24조(기능) 회계감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2.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행한다.
 - (1)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시
 - (2) 대의원회의 요청이나 조합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3. 각종 감사결과를 대의원 및 총회에 보고하여 시정 또는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4.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5. 회계감사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한다.
6. 본 위원회에서는 별도의 회계감사규정을 둘 수 있다.

제 5 절 선거관리 위원회

제25조(구성과 소집)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에서 호선된 대표위원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제26조(기능)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선거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 5 장 회 의

제27조(성립 및 의결) 본 조합의 각종 회의는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특별결의) 본 조합의 의결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징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긴급동의의 성립
4. 제11조 제1항의 목적적립금 사용에 관한 사항

제29조(회의 진행) ①조합의 각종 회의의 의장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위원장이 되며 유고 시에는 제33조(1)항 5호에 의한다.

②조합의 각종 회의결과는 총무 또는 간사가 회의록을 기록, 유지하고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임 원

제30조(임원) 본 조합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1명
3. 사무국장 1명
4. 회계감사 3명

제31조(임원의 선출과 해임) ①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통한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2. 임원 선거결과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 순으로 2명을 선정, 결선 투표한다.
다만, 사무국장과 회계감사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은 제28조에 의한다.

③ 그 밖의 임원 선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 제32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2년, 임기 시작일은 8월 1일, 임기종료일은 7월 31일로 한다.
 ②중임 할 수 있으며 횟수에 제한받지 않는다.
 ③보선된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3조(임무와 권한)

①위원장

1. 본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업무 일체를 통괄 지휘한다.
2.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3. 조합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4. 부서의 부서장을 임, 면한다.
5. 위원장 유고시의 직무대행 순위는 다음과 같다.
 - (1) 부위원장
 - (2) 사무국장
 - (3)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자.

②부위원장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또는 위원장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③사무국장

1.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조합의 일상 업무를 집행하며 부서장을 지휘한다.
2. 위원장의 재가를 받아 예산을 집행한다.
3. 조합업무에 관한 각종 감사에 응한다.
4. 삭제
 - (1) 삭제
 - (2) 삭제
 - (3) 삭제

제 7 장 사무국

제34조(부서) 조합 사무국에는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두고 각부에 부장 1명을 두고, 필요한 경우 차장을 둘 수 있다.

1. 총무부
2. 조사통계부
3. 홍보부
4. 복지부
5. 법규부
6. 쟁의·교육부
7. 여성부
8. 기획부

제35조(임무) 사무국의 각 부서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부 : 문서와 인장보관, 문서수발, 조합비 수납 지출과 타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조사통계부 : 조사통계자료 및 정보수집에 관한 사항
3. 홍보부 : 조합 활동에 관한 대내외 교육, 홍보, 조직, 계통 및 행사에 관한 사항
4. 복지부 : 조합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5. 법규부 : 조합에 관한 법규 해설 및 자료정리에 관한 사항
6. 쟁의·교육부 : 노동쟁의 활동 및 대책수립과 교육훈련 전반에 관한 사항
7. 여성부 : 여성조합원의 지위 향상에 관한 제반사항
8. 기획부 : 조합 활동에 관한 기획 및 대외협력 전반에 관한 사항

제 8 장 재 정

제36조(재원) 본 조합의 재원은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와 기부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37조(특별기금) 본 조합은 필요에 따라 특별기금을 둘 수 있다.

제38조(예산확정) 본 조합의 예산은 총회에서 심의 확정한다.

제39조(회계연도) 본 조합의 회계연도는 8월 1일부터 익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9 장 단체교섭, 쟁의 및 노사협의회

제 1 절 단 체 교 섭

제40조(단체교섭의 권한) 본 조합이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며 위원장이 교섭위원장이 된다.

제41조(단체교섭위원 구성) 단체교섭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고 대의원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4-10명으로 구성한다.

제42조(단체협약안 심의) 단체협약의 체결(갱신체결)안은 집행부에서 작성하여 대의원회의의 심의를 거치며 총회에 보고 설명해야 한다.

제 2 절 쟁 의

제43조(노동쟁의) 조합은 본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자와 평화적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해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

제44조(노동쟁의권) 평화적 교섭의 결렬로 인한 쟁의 선언권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위원장이 선언 할 수 있다.
2. 대의원회의의 의결로 선언 할 수 있다.
3. 총회의 의결 또는 조합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언 할 수 있다.

제46조(쟁의행위) 쟁의 행위의 결의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 조합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47조(쟁의대책위원회의의 구성) 노동쟁의가 발생하거나 또는 쟁의 발생이 예측될 시 위원장이 즉시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

제48조(쟁의대책위원회의의 의결) 쟁의대책위원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쟁의대책 수립
2. 대의원회 위임 및 지시사항과 기타 쟁의에 관한 중요한 사항 수행

제 3 절 노사협의회

제49조(노사협의회)

- ①본 조합과 대학간에 설치하고 노사협의회에 파견할 위원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며 대표위원은 위원장이 된다.
- ②노사협의회회의 대표위원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단체협약서 각 조항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사항
 2.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노사협의회 규정의 해석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0 장 포상 및 징계

제50조(포상) 조합원이 조합의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위원장 또는 대의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이를 표창 할 수 있다.

제51조(징계)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대의원회 결의에 따라 조합원을 징계 할 수 있다. 단, 조합입원 및 대의원의 징계는 총회에서 행한다.

1. 조합의 규약을 위반했을 때
2. 사용주의 사주에 의해 조직의 단결을 와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제52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 (1) 자기 임무에 충실하지 못한 자
 - (2) 각종 회의에 고의로 불참한 자
 - (3) 조합원의 신분을 망각, 조직상의 물의를 빚게 한 자. 단, 경고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자는 권한정지에 처한다.

2. 권한정지

본 조합의 결의 사항을 집행치 않거나 업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3. 제명

- (1) 본 조합의 조직을 파괴 또는 전복을 목적으로 이 규약에 위반 되는 행동을 한 자.
- (2) 본 조합의 지시 또는 결의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을 하여 조합운영을 방해한 자.
- (3) 조합비 및 기금을 유용, 횡령, 착복한 자.
- (4) 본 조합의 각종 선거에서 부정투표를 감행하거나 또는 선동하여 고의적으로 선거를 방해한 자.
- (5) 전체 조합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미치게 한 자 또는 폭력으로 조합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자.

제53조(징계위원회) 본 조합은 총회의 결의로서 5-7명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

제54조(재심) ①징계를 받은 조합원은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위원장에게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총회에 재심을 의뢰하여야 한다. 단, 재심 결정까지는 징계결

정의 효력은 유효하며 재심청구는 권한정지, 제명에 한한다.

제55조(규약위반에 대한 탄핵) ①임원 및 대의원이 규약을 위반하였을 때는 총회에서 탄핵을 의결 할 수 있다.
②탄핵은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발의 후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 할 수 있다.

제 11 장 해 산

제56조(해산사유) ①본 조합의 조직계획에 의하여 분할 및 병합을 필요로 할 때.
②전항의 경우 위원장은 즉시 총회를 소집하여 조합원의 3분의 2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결의할 수 있다.

제57조(청산) ①본 조합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할 때는 해산 일로부터 2일 이내에 위원장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5인 이내의 청산위원을 임명한다.
②청산위원회는 조합비 청산 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 청산한다.

부칙

1. 이 규약은 2004. 9.2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2. 이 규약 시행 전 4급 이상 직원은 이 규약에 의하여 조합원에서 제외된 것으로 본다.
3. 이 규약 시행 전 전국대학노동조합연맹 대구대학교 노동조합은 1996. 9.24일(정기총회의결)자로 전국대학노동조합연맹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4. 목적적립금의 한도액은 300,000,000원으로 하고, 조합원의 퇴직 또는 조합원 자격상실시 개인 부담원금은 전별금으로 환불한다.

부칙

1. 이 규약은 2008. 03. 0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2. 목적적립금은 조합원 개인당 75개월을 일률적으로 납입하며, 조합원의 퇴직 또는 조합원 자격상실시 개인 부담원금은 전별금으로 환불한다.
3. 제32조(임원의 임기)의 개정에 의한 해석 적용은 제11대 노동조합 임원은 제외된다.
4. 노동조합 후생복지비 지급표

구분	내용	금액	비고
축의금	본인결혼	100,000원	1회
	자녀결혼	100,000원	
조의금	본인	500,000원	조기 + 조화(3단) 1식
	부모(시·처부모) 배우자, 자녀	100,000원	조기 + 조화(3단) 1식
전별금	3년이상5년미만 10년미만 15년미만 20년미만	황금 2돈 3돈 5돈 7돈	4급 승진자와 조기 퇴직자는 중도 퇴직자에 준한다.
	정년퇴직, 명예퇴직	황금 10돈	
위로금	본인	70,000원	병가 5일 이상 1개월 미만
		70,000원	여조합원 자녀출산 축하
		300,000원	1개월 이상 병가 또는 입원 치료 한 경우

부칙

1. 이 규약은 2009. 02. 17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2. 제32조(임원의 임기)의 개정에 의한 해석 적용에 있어 제11대 노동조합의 임기 종료일은 2009년 07월 31일이 된다.

부칙

1. 이 규약은 2010. 09. 14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2. 목적적립금(특별기금)은 조합원 자격상실 때까지 납부하며,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는 개인 부담원금을 환불한다.

부칙

1. 이 규약은 2011. 09. 0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2. 노동조합 후생복지비 지급표

구분	내용	금액	비고
축의금	본인결혼	100,000원	1회
	자녀결혼	100,000원	
조의금	본인	500,000원	조기 + 조화(3단) 1식
	부모(시·처부모) 배우자, 자녀	100,000원	조기 + 조화(3단) 1식
전별금	3년이상5년미만 10년미만 15년미만 20년미만	300,000원 500,000원 700,000원 1,000,000원	4급 승진자와 조기 퇴직자는 중도 퇴직자에 준한다.
	정년퇴직, 명예퇴직	1,500,000원	
위로금	본인	70,000원	병가 5일 이상 1개월 미만
		70,000원	여조합원 자녀출산 축하
		300,000원	1개월 이상 병가 또는 입원 치료 한 경우

부칙

1. 이 규약은 2012. 04. 10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2. 목적적립금(특별기금)은 조합원 자격상실 전까지 납부하며,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는 개인 부담원금을 환불한다.
3. 노동조합 후생복지비 지급표

구분	내용 및 기준	금 액	비 고
축의금	본인결혼	100,000원	1회
	자녀결혼	100,000원	
조의금	본인	500,000원	조기 + 조화(3단) 1식
	부모(시·처부모) 배우자, 자녀	100,000원	조기 + 조화(3단) 1식
전별금	3년이상5년미만	300,000원	3급 승진자와 조기 퇴직자는 중도 퇴직자에 준한다. 단, 2012.04.10일자 개정 규약 제6조에 따라 조합원이 되는 4급 직원에게는 전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0년미만	500,000원	
	15년미만	700,000원	
	15년이상	1,000,000원	
	정년퇴직, 명예퇴직	1,500,000원	
위로금	본인	70,000원	병가 5일 이상 1개월 미만
		70,000원	여조합원 자녀출산 축하
		300,000원	1개월 이상 병가 또는 입원 치료 한 경우

4. (경과조치) 이 개정 규약 제6조에 따라 조합원이 되는 4급 직원은 2012년 4월부터 조합비를 납부한다.

부칙

이 규약은 2013. 9. 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부칙

이 규약은 2014.12.16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별표-1] 노동조합 후생복지비 지급표

구분	내용 및 기준	금 액	비 고
축의금	본인결혼	100,000원	1회
	자녀결혼	100,000원	
조의금	본인	500,000원	조기 + 조화(3단) 1식
	부모(시·처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100,000원	조기 + 조화(3단) 1식
전별금	3년이상5년미만	300,000원	3급 승진자와 조기 퇴직자는 중도 퇴직자에 준한다. 단, 2012.04.10일자 개정 규약 제6조에 따라 조합원이 되는 4급 직원에게는 전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0년미만	500,000원	
	15년미만	700,000원	
	15년이상	1,000,000원	
	정년퇴직, 명예퇴직	1,500,000원	
위로금	본인	70,000원	병가 5일 이상 1개월 미만
		70,000원	여조합원 자녀출산 축하
		300,000원	1개월 이상 병가 또는 입원 치료 한 경우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개정: 2016. 8. 23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규약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대구대학교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임원(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대의원, 회계감사)을 선출할 때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2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직무)

①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이라한다)는 위원장 1인과 선거관리위원 5명을 둔다.

②선거관리위원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선거사무를 총괄한다.

③선관위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입후보자의 등록 접수, 자격요건 심사 및 사퇴수리에 관한 사항
2. 선거인명부 작성
3. 투, 개표의 관리
4. 선거운동 관리
5. 합동연설회의 개최
6. 선거회의록 작성보고
7. 당선인 확정 공고 및 통보
8. 기타 일체의 선거관리 업무 및 유권해석

④선거관리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⑤선거관리위원의 해촉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임원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할 경우
2.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선관위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4. 본인의 의사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⑥선관위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⑦선거관리위원은 선거 종료 후 7일후에 해촉한다.

제3조(선거인 명부)

①선관위는 선거인명부를 선거일 5일전까지 확정한다.

②선거인 명부 열람은 선거일 2일전까지 한다.

③선거인 명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선거일 1일전까지 선관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선거권자가 선거인 명부의 미확인으로 인하여 선거당일 착오가 발생할 경우 선거권자는 선거권을 상실한다.

제 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4조(선거권) 선거일 현재 대구대학교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단, 휴직자는 제외한다.

제5조(피선거권) 선거권을 가진 자로서 직무에 충실하고 개혁의지와 실천력이 투철한 자이어야 한다.

제 4장 선거공고 및 후보등록

제6조(선거공고)

1. 선거공고는 최소한 선거일 10일 이전에 한다.
2. 입후보등록공고는 선거일 3일 이전에 한다.

제6조의1(선거일)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일은 임기만료 90일 내지 30일 전으로 한다.

제7조(입후보자 등록)

①위원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부위원장 1인을 지명하여 조합원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등록 기간 중에 다음 구비서류를 갖추어 선관위에 등록을 필해야 한다. 단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입후보하는 조합원은 한 조를 이루어 입후보하여야 한다.

1.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서식 1)
2. 위원장(부위원장) 입후보자 추천서 1부 (서식 2)
3. 부재자투표 및 선거·개표 참관인 지정 1부 (서식 3)

②대의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 기간 중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조합원은 임원 선거 시 2개 선거에 중복 입후보할 수 없다. 중복 입후보 사실이 발견된 경우는 모든 등록을 무효로 한다.

④선관위는 입후보자등록 마감 후 기호 추첨을 실시한다. 기호 추첨 후 24시간 이내에 입후보자의 기호, 성명, 소속을 선관위가 지정하는 교내 인터넷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입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직접 선관위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⑥입후보자 사퇴, 퇴직, 사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입후보자 자격심사) 선관위는 입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입후보자를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입후보 자격을 상실한다.

①후보등록신청서가 관계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즉시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하고 명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시정 또는 보완되지 않을 경우 입후보 자격이 상실된다.

②제5장 선거운동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관위는 후보자에게 위반사실을 소명토록 하되 위반사항이 고의적이고 중대한 경우 선관위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자격상실을 의결할 수 있다.

③선관위의 처분 또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위 3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선관위에서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제 5장 선거운동

제9조(선거운동시기)

①선거운동은 입후보등록일로 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0조(유세)

①선관위에서는 입후보자의 공개유세 필요시

선관위가 지정하는 인터넷망에 일시, 장소, 순서, 방법 등을 공고하고 각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입후보자 홍보물은 입후보자소견문 1회(A4기준: 4쪽이내), 개별 홍보물[2회, 각 회당 (A4기준: 4쪽이내)]로 작성하여 선관위에 접수한다. 선관위는 내용 검토 후, 이를 조합원에게 배포한다.

제11조(선거운동 시 금지사항)

①입후보자는 선거운동 시 다음 행위를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금품수수, 향응제공
2. 인신공격, 중상모략
3. 타 후보의 정당한 선거운동 방해
4. 기타 조합원의 권익을 명백하게 저해하는 행위

②조합원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2조(벌칙) 제11조 각 항에 위반하는 입후보자에 대해 선관위의 의결을 거쳐 경고하고 입후보자가 3회 이상 경고를 받을시 등록이 취소된다.

제 6장 선거방법

제13조 본 선거는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총회에서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대의원 10인을 선출 한다. 단, 사무국장 및 회계감사의 선출은 별도로 정한다.

제1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①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은 단일후보일 경우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이상 신임찬성으로 당선된다. 단, 부결되면 규정 제29조(재선거)에 준 한다.

②2인 이상의 후보일 경우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당선된다.

③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시에는 후보자가 2인일 경우는 다수득표자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득표자 2인에 대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가 당선된다. 단, 2차 투표에서 양 후보의 득표가 동일할 경우 위원장 후보자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부재자투표를 신고 후, 실시한다.

1. 선거일에 공무 출장, 휴가, 입원 등 선거일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조합원
2. 선거관리위원
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일 투표에 참여 할 수 없다고 선관위에서 인정한 조합원

⑤위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은 선관위에서 지정한 부재자 투표장소, 일시에 투표용지를 수령, 기표 후 즉시 투표용지를 봉인하여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대의원 선출) 대의원 선출은 입후보자가 10인 이하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확정되고, 10인을 초과할 경우에는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에 의해 10인을 기표하고 1차 투표에서 다수 득표자 순으로 당선된다.

제16조(사무국장 선출)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선출된다.

제17조(회계감사 선출) 회계감사(3인)는 총회에서 호선을 받아 1차 투표에서 다수득표자를 당선으로 한다.

제 7장 투표 및 개표

제18조(투표장소 및 시간) ①투표 장소 및 시간은 아래 각 호에 의한다.

1. 투표는 선관위에서 결정하는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2. 투표 개시 및 종료 시간은 선관위에서 따로 정한다.

②투표를 개시하기 전까지 선거관리위원이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 유무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투표용지) 투표용지는 선거후보 등록 마감 후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하고,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와 동일하게 제작한다.

제20조(투표방법) ①선거권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고 투표용지를 교부 받는다.

②선거권자는 선관위에서 지정하는 기표소, 기표도구로 기표하여야 한다.

제21조(개표관리) ①당해 선관위는 투표 종료 후 투표소에서 개표한다.

- ②부재자 투표는 개표 시 합산하여 개표하다.
- ③개표의 유·무효 결정은 공직선거에 준한다.
- ④선거관리위원장은 각 후보자가 지명한 1명 이내의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개표 과정을 참관하도록 한다. 입후보자는 개표에 참관 할 수 없다.

제22조(개표결과 보고 및 투표용지 등의 보관) ①선관위는 개표가 종료 후 즉시 개표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선관위는 개표 종료 후 투표용지 및 선거인명부를 선거관리위원이 봉인하여 조합에 보관한다.

제23조(당선인 결정) ①규정 제14조에 선출방식에 의거하여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선관위는 당선증을 교부하고 3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당선인 결정의 착오시정) 선관위는 당선인 결정에 대하여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일 후 5일 이내에 당선인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

제25조(임기의 개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개시한다. 단, 보궐선거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당선일 결정된 날로부터 개시되며 전임자의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제26조(무효투표)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무효표 처리를 할 수 있다

1. 규정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2.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없는 것
3. 투표용지에 한 후보자 기표이외의 표식이 있는 것
4. 훼손된 투표용지

②선거관리위원 및 참관인이 동의 한 표는 유효표로 처리할 수 있다.

제27조(이의신청의 처리) ①투표 및 개표 도중 조합원이 이의가 있을 경우 선관위의 결의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②선거종료 후 선거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선거일로부터 2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선관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선관위에서는 관계 증빙서와 자체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선거종료 후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일부무효
4. 기각

제 8장 선거연기 및 재선거

제28조(선거연기)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관위에서 의결하여 연기할 수 있다.

제29조(재선거)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 재선거를 실시한다.

1. 선거가 무효(당선자 없을 경우 포함)로 결정되었을 때
2. 당선인이 임기 개시전에 사퇴 또는 피선거권이 상실된 때
3. 재선거 일정은 선관위에서 의결하여 정한다.

제30조(보궐선거) ①본 조합의 임원이 궐위(사망, 해임, 사임, 기타 자격의 상실 등으로 지위에 있지 않은 경우)된 경우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120일 이내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③보궐선거는 궐위 된 경우 이날로부터 30일 이내로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0년 9월 14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6년 8월 23일 부터 변경 시행한다.
2. 본 규정 변경에 따라 선거규정 시행세칙은 폐지한다.

[별지서식]

1. 입후보등록신청서
2. 추천서
3. 부재자투표 및 선거·개표 참관인 지정

[서식1-1. 위원장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위원장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상기 본인은 제00대 노동조합 위원장에 입후보하여 규약을 준수하고 소기의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 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20 . . .

입후보자:

(인)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서식1-2. 부위원장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부위원장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상기 본인은 제00대 노동조합 부위원장에 입후보하여 규약을 준수하고 소기의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 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20 . . .

입후보자:

(인)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서식1-3. 대의원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대의원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상기 본인은 제00대 노동조합 대의원에 입후보하여 규약을 준수하고 소기의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 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20 . . .

입후보자 :

(인)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서식3. 부재자투표 선거 참관인 지정]

부재자투표 및 선거 개표 참관인 지정

참관인 :

위 사람을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제00대 임원선거 시 부재자투표 및 선거개표 참관인으로 지정합니다.

20 . . .

입후보자 : (인)

참관일시

- ▶ 부재자선거: 20 . . . () 00:00~00:00
- ▶ 선거 일: 20 . . . () 00:00~개표완료시까지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선거규정 세부시행세칙

1992. 3. 7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선거규정에 의거 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후보 등록 제출서류) 본 규정 제 7조에 따라 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및 입후보 추천인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입후보자의 공고방법) 노동조합 게시판에 공고한다.

제4조(입후보자 사퇴의 신고) 입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직접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입후보자에 관한 공고) 입후보자 사퇴, 퇴직, 사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투표용지) 투표용지 하단에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장 직인을 날인한다.

제7조(투표인 명부작성) 선거를 실시할 때에는 5일전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투표인 제한)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제9조(참관인) 개표시에는 입후보자가 지명한 1인 또는 2인이 선거참관인으로 출석하여야 한다.

제10조(선거운동)

가. 정의

1) 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2)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의사의 표시와 입후보를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니다.

나. 선거운동기간 :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공고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조합원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라. 후보자의 비방금지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당선 또는 낙선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신분, 경력, 인격 등에 관하여 허위와 사실을 진술하거나 유포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지시하여 개인의 인신공격을 할 수 없다.

마. 금품 제공금지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떠한 장소에서 어떠한 명목으로써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제11조(보고) 전조에 위배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나 선관위 위원장이 대회당일 날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세칙의 개폐) 본 세칙 개폐는 대의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3조(입후보자 이의신청) 입후보자는 선거 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24시간 이내에 선관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당선자 확정 공고) 선관위는 당선이 확정되면 3일 이내에 당선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선거 무효) 선관위는 입후보자가 의의를 제기하여 그 사실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3일 이내에 선거무효를 선언하고 재선거를 공고하여야 한다.

부 칙

1.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선관위 의결에 따른다.

2. (시행) 이 세칙은 1992. 3. 7부터 시행한다.

규 약(안)

2018. . . 제정

한국노총/전국00노동조합연맹
()노동조합

규 약

전문

()노동조합은 전체 조합원들의 사회적, 경제적 권익을 향상하고, 나아가 전국의 노동자단체와 굳게 연대하여 노동이 존중받는 평등·복지사회를 건설하고 노동자로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조합의 명칭은 ()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조합은 조합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민주시민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옹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조합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전개한다.

1. 노동3권의 확립에 관한 사항
2. 조합원의 노동조건 유지·개선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의 문화,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4. 조합원의 고용안정 및 실질 임금 확보에 관한 사항
5. 기업운영의 민주화와 성과배분의 적정화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와 직업병 퇴치에 관한 사항
7.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지위 향상과 평등사회 건설에 관한 사항
8. 조직 확대 강화와 타 업종별, 지역별, 산업별 연대활동을 통한 자주적인 산업별노동조합 건설에 관한 사항
9. 비정규직(촉탁, 임시), 용역, 하청 등의 작업환경 및 임금·노동조건에 관한 사항
10.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및 사회개혁에 관한 사항
11. 기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 [주된 사무소]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에 둔다.

제5조 [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6조 [연합단체] ① 조합은 규약 제3조에 명시된 사업의 효율적 집행과 조직력 강화를 위해 대의원대의 결의를 거쳐 한국노총 산하 상급단체에 가입한다.

② 조합은 필요시 각종 연대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2장 조직

제1절 조합원

제7조 [구성] 조합은 ()에 근무하는 자 중 조합에 가입된 자로 구성한다. 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정한 사용자에 속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8조 [가입 및 탈퇴] ①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가입원서를 제출, 위원장의 결재와 동시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며 위원장은 본 규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가입원서 제출자에 대하여 결재를 거부할 수 없다.

② 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탈퇴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탈퇴서가 제출된 때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는 징계절차가 끝난 이후에 탈퇴할 수 있다.

제9조 [조합원 자격의 상실] ①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날로부터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퇴직 또는 해고되었을 때
2. 조합에서 제명되었을 때
3. 규약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조합을 탈퇴한 때

② 제1항 제1호의 해고는 이에 불복하여 동 사안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

제2절 권리와 의무

제10조 [조합원의 권리]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조합의 모든 활동과 사업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2. 조합의 결정사항과 업무집행사항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3. 조합의 각종 선거권과 피선거권
4. 조합 규약에 따라 각종 회의에 출석, 발언 및 의결할 권리
5. 임원 및 대의원에 대한 불신임권
6.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에 참여할 권리
7. 조직 해산 및 변경 시 재산청구권
8. 조합이 관리하는 시설 또는 사업을 균등하게 이용할 권리

② 전항의 권리는 규약에 의하지 않고 제한받지 않는다. 다만,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은 규정에 따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조합의 규약 및 규정과 각종 기구의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조합비 및 총회(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각종 기금을 납부할 의무
3. 조직의 규율을 준수하고 조합의 명예를 지킬 의무
4. 조합의 목적과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
5. 제 협약과 조합이 쟁취한 권익을 지킬 의무
6. 조합내 필요한 비밀을 지킬 의무

제12조 [신분보장] ① 조합원이 의결기구의 결정사항 및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수행하다 신분상 또

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한 경우에는 신분을 보장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한다.

② 제1항의 보상 및 지급방법은 별도로 정하는 희생자구제 및 유족지원규정에 의한다.

제13조 [조합원 비밀보호] 조합은 업무상 취득한 조합원의 개인정보 및 비밀을 관계법령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3절 지부

제14조 [설치] 조합은 조직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별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하 조직으로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 조합은 규약범위 내에서 산하조직의 자율적인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고 지원하며, 세부 내용은 별도의 지부운영규정에 의한다.

제16조 [활동] 각 지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조합 사업계획에 의거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집행
2. 조합의 지시 및 위임사항 이행
3. 조합에서 설치한 각종 기구의 운영관리
4. 조합원의 고충상담 및 처리
5. 조직관리 및 강화활동
6. 지부에서 필요한 사업 및 활동
7. 기타 조합에서 필요한 자료조사 및 문제점 발굴 개선 사업

제17조 [의무] 지부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1. 활동 사항 및 회계결산 보고
2. 각종 기구의 운영상황 보고
3. 조직보고
4. 기타 조합이 필요로 하는 사항 및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의 보고

제3장 기구

제18조 [기구] 조합에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1. 총회(대의원대회)
2. 운영위원회
3. 상무집행위원회
4. 회계감사위원회
5. 쟁의대책위원회
6. 선거관리위원회
7. 징계위원회
8. 희생자부조위원회
9. 여성위원회

10. 기타 특별위원회

제1절 총회

- 제19조 [총회의 구성 및 소집] ①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대회를 둘 수 있다.
- ② 정기총회는 매년 ()월 중에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1개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조합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3. 대의원대회에서 총회 소집을 의결한 때
-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에 부의할 사항과 일시 및 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소집 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3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⑤ 총회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 중 최연장자가 총회를 소집한다.

제20조 [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과 해임, 징계에 관한 사항
3.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 및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안) 승인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 변경 및 조직의 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9. 징의행위결의에 관한 사항
10.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11.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 선출
12. 각종 정책 건의
13. 기타 주요 안건에 관한 사항

제2절 대의원대회

- 제21조 [대의원대회의 구성 및 소집] ①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대회는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②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월 중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개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임시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

3. 운영위원회에서 대의원대회 소집을 의결한 때

④ 소집 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3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 [대의원대회의 기능] 총회 의결사항 중 대표자의 선출과 해임, 조직형태의 변경, 조직의 합병, 분할, 해산, 쟁의행위 결의를 제외한 사항은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 [대의원의 선출 및 임기] ① 대의원은 (부서별/지역별) 선거구에서 조합원 ()명당 1명씩 선출하며, 단수 ()명 이상일 때 추가로 1명을 배정한다.

② 대의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며,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의 선출전일까지로 한다.

③ 대의원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단위 선거구별로 즉시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새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전임자의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제3절 운영위원회

제24조 [구성 및 임기] ① 운영위원회는 회계감사를 제외한 조합 임원 및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의 임기는 대의원의 임기에 준한다.

제25조 [소집]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운영위원 1/3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위원장에게 소집을 요구한 때
2.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26조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 및 대의원대회 수임사항 처리
2. 임시총회 및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요청
3. 상무집행위원회 상정안 처리
4. 조합운영 방침 및 정책 수립
5. 조합원 징계재심에 관한 사항
6. 각종 규정의 제정과 개정
7. 특별위원회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본부 및 지부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
9. 예산의 항간 전용 및 추경예산에 관한 사항
10. 예비비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11. 임원 선거관리위원 선출
12. 대의원 선거구 조정
13.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 위촉에 관한 사항(단, 규약에 정한 직무대리 순위가 모두 유고일 때)
14. 규약 및 규정의 해석
15.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
16. 대의원대회 상정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
17. 상급단체 단체교섭 위임에 관한 사항

18. 기타 중요한 사항

제4절 상무집행위원회

제27조 [구성과 소집] 상무집행위원회는 회계감사를 제외한 조합의 임원 및 각 부서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상무집행위원 1/3이상이 회의소집을 요청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8조 [기능]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 및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의 수입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2. 조합 일상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3. 총회 및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수립
4. 조합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조합 예산, 결산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6. 기타 통상 관례에 따른 업무 진행에 관한 사항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제29조 [구성 및 운영] 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운영위원회가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한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선거관리위원이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특정후보 선거대책업무를 맡을 경우 사퇴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5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 후보등록, 선거운동방법, 투개표, 당선인 결정 등 선거관련 제반업무를 관리한다.

제30조 [선거관리규정] 선거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6절 회계감사위원회

제31조 [구성] 회계감사위원회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표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2조 [소집 및 기능] ① 회계감사위원회는 대표위원의 소집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1.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시
2. 대의원 1/3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시

② 회계감사위원회는 감사의 결과를 총회(대의원대회)에 보고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③ 회계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33조 [성립 및 의결] 조합의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34조 [진행] 조합의 회계감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제반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규약 (제39조)에 따른다.

제35조 [특별결의] 조합의 의결사항 중 다음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조합의 합병·분할 및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4. 긴급 및 번안동의 성립에 관한 사항

제5장 임원

제36조 [임원] 조합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명이내(수석부위원장 1명 포함)
3. 사무국장 1명
4. 회계감사위원 ()명

제37조 [임원의 선출과 해임] ① 회계감사의 선출과 불신임(해임)은 대의원대회에서 하며, 회계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선거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② 임원의 선거결과 1차 투표에서 과반수 투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2차 투표결과 당선자가 없을 시 다수득표자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제38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이 유고되었으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제39조 [임원의 임무와 권한] 임원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 1) 조합을 대표하고 일체의 조합업무를 지휘·감독하며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 2) 회계감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제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 3) 조합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 4) 각 부서장의 임면권자가 된다.
 - 5) 조합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 6) 기타 조합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 7) 위원장 유고시의 직무 대행은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연장자순), 사무국장 순으로 한다.

제43조 [대표권 및 교섭권] ① 조합의 모든 단체교섭의 대표권과 교섭권은 위원장에게 있다. 단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대표권 및 교섭권을 교섭위원 중 특정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조합은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거쳐 상급단체에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44조 [교섭위원] 교섭위원은 위원장과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자로 한다.

제45조 [단체교섭요구안 확정] 조합의 단체교섭요구안은 조합원의 의견 수렴 후 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한다.

제46조 [협약 체결] 조합의 단체협약은 위원장이 체결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8장 노동쟁의

제47조 [노동쟁의] 조합은 본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자와 평화적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제48조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합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위원장이 신청한다.

제49조 [쟁의행위의 결의] ① 조합의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어 실행하는 쟁의행위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② 조합은 제1항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를 조합계시판에 공고하고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를 쟁의행위 종료 시까지 보관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50조 [쟁의대책위원회 구성] 노동쟁의가 발생하거나 쟁의발생이 예측될 시 위원장은 즉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쟁의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 및 집행
2. 조합 쟁의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3. 쟁의기금에 관한 사항

제9장 노사협의회

제51조 [목적]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 조합원의 복지증진과 조합의 발전을 도모한다.

제52조 [노사협의회 위원] ① 노사협의회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② 위원장은 노사협의회 의 노조측 대표위원이 된다.

제53조 [운영]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0장 재정

제54조 [재정] 조합의 재정은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와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55조 [조합비] ① 조합비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일반 조합비는 매월 급여일에, 특별 조합비는 납부결정이 있는 달이 속한 급여일에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일반조합비 : 월 ()원 / (기본급, 통상임금, 월임금총액)의 ()%
2. 특별조합비 : 규약 제11조 및 제12조에 의한 특별기금

② 조합원은 소정의 조합비를 급여일에 원천 공제하여 조합에 인도함을 인정한다.

제56조 [가입단체 회비] 조합이 상급 노동단체에 가입하였을 경우 상급단체에 소정의 의무금을 납부한다.

제57조 [회계년도] 조합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설립년도의 회계년도는 설립일로부터 설립년도의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58조 [가예산] 당해 연도의 예산이 미성립 시 전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가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득한 후 집행한다.

제59조 [예산항목 간 전용] 예산항목 간 전용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예산과목 전체의 4분의 1 이상을 변경하거나 전체 예산액의 20% 이상을 전용할 경우에는 총회(대의원대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60조 [결산] 회계연도말 결산 및 운영사항은 총회(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은 후 공표하여야 한다.

제61조 [회계규정] 조합 회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회계규정을 둘 수 있다.

제62조 [회계감사] 조합비 회계의 적정여부는 회계감사위원이 6개월 마다 1회씩 감사하여야 하며 회계감사 위원은 회계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하고 위원장은 그 시정결과를 총회(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장 표창 및 규율

제63조 [표창] 조합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조합원 및 대외인사는 조합 상무집행 위원회 결의를 얻어 표창한다.

제64조 [징계] ①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1. 조합 규약 및 운영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정당한 결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조합 및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반조직행위를 하였을 때

4.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때
 5. 정당한 이유 없이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때
단,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나 운영위원회에서 미납의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제외된다.
 6. 사용자의 사주에 의해 조합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조직의 단결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
- ② 징계 시에는 해당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5조 [임원의 불신임] 임원불신임은 선출기관에서 행하며,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재적인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한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66조 [표결권의 특례] 노동조합이 다음 사항의 조합원에 관하여 의결할 경우에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

1. 임원의 해임 결의
2. 조합원 징계

제67조 [징계의 종류] 징계종류는 그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경고
2. 권리정지(최고 1년 이내)
3. 제명

제68조 [재심청구] ① 징계를 받은 조합원은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에 재심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재심은 원심의 결정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심결정 시까지 징계결정 효력은 유보된다.

제12장 해산

제69조 [해산] 조합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해산한다.

1. 규약에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재적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2 이상이 결의한 경우
3. 노동조합의 합병 또는 분할

제70조 [청산] ① 조합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할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장은 총회(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어 10명 이내의 청산위원을 임명한다.

② 청산위원회는 조합비 청산안을 작성하여 총회(대의원대회)의 의결을 얻어 청산을 개시한다.

부칙

제1조 [시행] 본 규약은 통과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통상관례] 본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